

## 자동차보험의 친족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 부모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  
Focused on the relative insured concept of a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김영길\*

Youngkil, Kim

### <국문초록>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념은 자동차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중의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피보험자 개념이 의외로 난해하여 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피보험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손해사정실무에서 잘못 해석된 내용이 통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비판이 없다보니 그릇된 해석론(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이 보험실무에 정설로 굳어져 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혼선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친족피보험자 개념을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친족피보험자성에 대한 연구자료 부족과 관련된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 신체손해사정사

투고일:2015.07.30. 심사일:2015.08.14. 게재확정일 2015.08.21.

이에 본 논문에서 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피보험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해봄으로써(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는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봄으로써) 그동안 보험실무에 자리 잡은 잘못된 해석론이 시정되고 무단 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시도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국문 주제어 : 자동차보험,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미성년자, 무단운전

## I. 들어가는 말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있어서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 즉,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배상책임 담보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지위 즉, 배상책임 주체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해보험 성격을 갖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지위 즉, 보험사고의 객체를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를 피보험자라 일컫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가해자 및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로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친구, 사용자, 피용자 등 기명피보험자의 친인척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들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하고도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도모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sup>1)</sup>

그런데 이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중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사용피보험자와 관련해서는 보험실무와 소송실무상, 강학상 특별히 논란이 없고 승낙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약관 해석상의 난해함과 타당성을 상실한 판례들<sup>2)</sup>로 인해 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와 학

1) 남원식의 6, 「조문별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울출판사, 1998, 246면 / 이보환, 「실무 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7, 507면 /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관련 피보험자의 범위”,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2014, 234면.

2) 승낙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이론에 맞지 않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sup>3)</sup>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친족피보험자와 관련하여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 즉, 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무단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는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적어도 승낙피보험자 내지 운전피보험자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할 실익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거의 없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는 대법원은 물론이고 하급심에서조차 다루어진 사례가 없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논문도 전무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판례들이 다수 있다. 예컨대, 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한 피고(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인 공사자재(유로폼) 운반작업에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운전기사의 크레인 조작 실수로 피고를 부상케 한 사안에서 피고를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승낙조합원)로 보아 대인배상Ⅱ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수긍한 판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 갑이 제주도에서 업무상 불일이 있어 제주도에 사는 친구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한 뒤(대여비는 갑이 부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 조항 삽입) 제3자인 갑의 부하직원 을로 하여금 운전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승낙피보험자를 갑이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1533 판결) ; 고용주에게 고용된 운전사가 무면허자에게 일시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케 한 사안에서 고용운전사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기명피보험자인 소속부대가 관리하는 피보험자동차(소속부대장 승용차)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소속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피고의 사고 당시 운전 경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타당성을 상실한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 개념을 도입한 취지 및 보험이론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몇몇 특수한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판례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렌터카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와 맺은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케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운전한 그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나와 있지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킨 임차인의 승낙피보험자 지위 상실 여부와 관련된 판례는 없다. 제3자 운전금지 약정 위반을 주도한 자는 제3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승낙피보험자의 지위 유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할 것이다.

- 3) 조규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법학논총 제20집 제3호, 2013, 553-575면, 조규성,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 고찰”, 동아법학 제63호, 2014, 159-192면, 이상돈, “자동차보험의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소고-판례에서의 운전피보험자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손해보험 제473호, 2008, 50-69면.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및 참고문헌도 없고 이에 대한 연구 및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실무는 약관의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론이 타당한 것일까? 동 약관 조항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동 약관을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해석하여도 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또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친족피보험자성을 수긍하고 있는 보험실무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론적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해본 뒤 친족피보험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구별실익을 알아보고 문제제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개념과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대한 보험실무의 입장을 알아보고 보험실무의 태도가 과연 옳은지, 옳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석론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판례와 참고문헌이 없는 관계로 친족피보험자 규정의 존치이유(규정취지), 친족피보험자 규정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 친족피보험자의 본질적 개념 등을 토대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 II.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 1. 피보험자의 의의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그 의미가 다르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반면에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

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으로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인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이다. 인보험은 그 성격상 피보험자는 자연인에 한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으므로 법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동으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2. 피보험자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대표적으로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다.(이하 이들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를 5種(종)의 기본 피보험자라 부르기로 한다) ①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 ②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④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⑤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한다.<sup>4)</sup>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는 이 5種(종)의 기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예컨대, 대인배상 I 에서는 5種(종)의 기본 피보험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고,<sup>5)</sup> 자기신체사고에서는 5種(종)의 기본 피보험자

4)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5.

5) 보험실무적으로 통상 보유피보험자라고 부른다. 이하 보유피보험자로 부르기로 한다.(2013. 4. 1. 약관개정 때 신설하였다)

외에 이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인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오로지 기명피보험자만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대인배상 I의 경우에는 자동차취급업자가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 포함되지만,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차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취급업자라 함은 유상, 쌍무계약에 기초하여 자동차의 정비업, 주차업, 급유업, 세차업, 판매업, 탁송업 등<sup>6)</sup>과 같이 타인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보험 약관상의 용어이다.

### 3.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 I에서는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⑥ 보유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는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로 규정하면서 자동차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는 표준약관이 아닌 각 보험사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각 보험사 공히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⑥ 이들(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무보험자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도 자기신체사고와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이 아닌 각 보험사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각 보험사 공히 ①

6) 대리운전업은 2006.11월 보통약관 개정시 취급업자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등’에 대리운전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운전업을 취급업자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편,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는 대리운전업을 여전히 취급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약관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함),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던지 여부를 불문함),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④ 운전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취급업자는 역시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오로지 기명피보험자만이 피보험자로 인정된다.

### III. 자동차보험에서의 친족피보험자

#### 1. 약관규정

보험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로 규정하고 있다.

#### 2. 인정요건

약관상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약관에서 정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여야 한다.

같이 산다는 것은 동일한 가옥에서 동거를 한다는 뜻이고 살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같이 산다’ 는 개념(동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의 추정력을 지니므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빙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또는 동거

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97-14. 1997.3.24. 결정 / 조규성, “대법원판례를 통해본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손해사정연구(제3권 제1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0, 113면.

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일시적 별거로 보아 동거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sup>8)</sup> 예컨대, 회사 업무차 해외 파견 중인 경우, 어학 연수차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군입대한 경우, 상해 또는 질병 치료차 장기입원 중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 중이라면 당연히 본 요건을 충족한다. 예컨대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살림을 같이 한다’ 는 개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에 있다는 개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동일 가옥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주거 형편상 동일 가옥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다만,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소득원이 있는 실제 부양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부양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sup>9)</sup> 동거 가족이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면 동거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친족에 해당되어야 한다.

친족이라 함은 민법(제777조<sup>10)</sup>)상의 친족을 의미하고 민법상 친족이란 ① 8

- 
- 8) 이상원,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2001, 36면.  
 9) 母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녀가 母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母를 실제로 부양하는 父(연봉 3000만원 수준의 급여소득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계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국심 2004전 3084, 2005. 6. 24. 결정).  
 10)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촌 이내의 혈족(부계, 모계 불문)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약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시키고<sup>11)</sup> 있다. 혈족에는 법정혈족, 자연혈족이 있는데 법정혈족이란 법률에 의하여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양자, 양부모 등) 자연혈족이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인척이란 혼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친족으로서 ① 배우자의 혈족(예 : 장인·장모, 시부모 등) ②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 동서, 처남의 배우자 등)를 말한다.

### (3)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이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란 보험에 가입된 당해 자동차를 말하고 사용, 관리의 개념은 현실적인 사용, 관리뿐만 아니라 평소의 사용, 관리 및 잠재적인 사용, 관리의 개연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상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친족피보험자의 요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약관 그 어디에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문구가 없다.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 실무에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보험 약관에 상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보니 애당초 피보험자성을 가질 수 없는 무단운전자까지도 친족피보험자로 판단하고 만 것이다. 항을 바꾸어 약관에 친족피보험자를 승낙피보험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존치한 이유와 승낙피보험자와 달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무엇이고 동 약관의 규정 문구와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가 친족피보험자 해당하는지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5.

## IV. 부모 소유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성

### 1. 보험실무의 입장

친족피보험자는 가족(친족) 관계의 경제, 신분상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승낙피보험자와 달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다 용이하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항인데 보험실무는 약관 규정 문구에만 얽매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해(또는 명백히 반하여) 운전한 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성까지도 긍정하고 있다. 이 견해는 학계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도 지지받고 있다. 즉, 보험실무에서 긍정하고 보험실무의 영향을 받은 학계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학계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관련 학원가의 지지의견이 또 다시 보험실무에 투영되는 순환고리가 굳건하게 견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제정취지와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약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문언대로만 해석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여진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없어도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없이(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한 무단운전자까지도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결과이다.

### 2. 친족피보험자 조항의 존치이유(규정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이면 족하다.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함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승낙피보험자와 달리 친족피보험자 요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은 약관규정 문구상 명확하다. 또한 동 약관의 존치이유(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약관에 친족피보험자를 승낙피보험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존치한 이유와 승낙피보험자와 달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친족 및 가족관계의 경제, 신분상의 동질성과 자동차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성을 인정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sup>12)</sup>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없다하여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승낙피보험자와 차이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약관에 구태여 친족피보험자를 승낙피보험자와 별도로 존치시킬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sup>13)</sup>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며 이 점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친족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또는 명백히 반하여) 무단으로 운전한 친족에 대하여도 친족피보험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3.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

약관의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동거 내지 살림을 같이하는 가족(친족)끼리 예컨대, 부모가 자녀 명의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명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실

12) 남원식 외6, 앞의 책, 247면 / 백주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2009.2, 32면.

13)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관련 피보험자의 범위”,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2014.2, 234면 / 김광국, “자동차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사례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12, 329-360면. / 김영길, “자동차보험이론과 실무”, 로이즈출판사, 2014.12. 10면 / 김현록, “자동차 보험상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한 연구 : 대인배상Ⅱ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 2002.2, 24면.

제 생활상과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통념 내지 한국적 정서(현실)에도 반한다.

동거하는 가족(친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해도 좋다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평소에(사전에) 내재(용인)되어 있고 자동차를 운전(사용)할 운전 기술과 자격, 운전경험, 정당한 이익과 권한이 있는 가족(기명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승낙 없이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가족)은 구태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정서적 요청과 실생활의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고 가족(친족)의 피보험자동차 사용의 정당성(권한 내지 자격)을 전제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지 무단운전의 경우까지 보험보호를 해주기 위해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님에도<sup>14)</sup> 보험실무는 무단운전의 경우까지 친족피보험자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를 명확히 따져보고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취지, 승낙피보험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당해 조항의 외관 및 문언적 의미만 가지고 이해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로 보험실무에서 부모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가 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놓는 근거는 단지 약관에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논거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성

14)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제정함에 있어 운전기술 및 운전경험, 범정면허가 없어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은 미성년 자녀가 무단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경우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미성년자에게 보험혜택을 줄 요량으로 동 약관조항을 승낙피보험자와 별도로 존치시키고 친족피보험자 요건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일반상식 및 사회상규에도 반한다)

평소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해온 가족(친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득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하였다하여 그 가족(친족)의 피보험자동차 운전(사용)을 두고 무단운전(사용)으로 취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 평소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해온 가족(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군대에서 휴가나온 자녀가 일시적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당해 운전(사용)이 정당한 사용<sup>15)</sup>인 한 역시 무단운전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용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결국 무단운전의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무단운전이라 함은 보유자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sup>16)</sup>

주지하다시피 기명피보험자의 미성년 자녀는 통상 면허가 없고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 내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부모 입장에서는 그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소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해온 적도 없고 자동차를 운전, 조작할 기술과 경험도 없고 부모로부터 정당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오히려 엄격히, 명백히,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적정 면허도 없는 미성년 자녀의 무단운전의 경우까지 약관에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것은 무단운전자는 근원적으로 피보험자群(군)에서 제외하려는<sup>17)</sup>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제도의 근간<sup>18)</sup>을 훼손할뿐더러 자동차보험에서 기

15)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자녀가 법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운전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16)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11, 9면. ; 김영길, 앞의 책, 313면.

17) 운전업무 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여 그 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인 사용자 등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설사 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18)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험에는 5種(종)의 기본 피보험자가 있으며 이들 피보험자群(군) 중에 무단운전자는 어느 유형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異論(이론)이 없다. 이러한 理論的(이론적) 바탕에 기초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복수 피보험자群(군)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까지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기본취지에도 반한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피보험자群(군)을 확대하여 인정해주는 취지<sup>19)</sup>는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내지 권리(권한)가 있는 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의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때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함인 것이고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들의 구체적 유형이 바로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인 것이다.

무단운전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들 피보험자群(군) 중 어느 한 유형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어떤 시점이든 또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동차 운전(사용)에 대한 용인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사전적으로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해 명백하고도 엄격히 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자들은 애당초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群(군)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해 명백하고도 엄격히,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자가 이에 반해 운전하게 되면 이는 곧 무단운전에 해당되고 무단운전의 전형이 바로 렌터카 사고에서 제3자 운전 금지조항을 위배하여 운전한 제3자<sup>20)</sup>와 본고에서 지적하는 부모 몰래 부모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이다. 이들은 피보험자동차 운전(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의 개연성은 단 1%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1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 렌터카 임차인(승낙피보험자)이 렌터카 회사와 맺은 제3자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차량을 운전케 한 사례에서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 5. 무단운전자가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무단으로 사용(운전)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이라 함은 평소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해왔거나 평소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해도 좋다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운전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적격 면허소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단운전자의 경우까지 동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 관리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무단운전일지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당시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였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친족에 의해 이루어진 절취운전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에는 적어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운전)하였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기이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문언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한 바는 없지만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내지 관리할 기술적 능력과 경험, 정당한 권한 및 자격을 보유한 친족(가족)의 사용,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평소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해온 적도 없고 자동차를 운전, 조작할 기술과 경험도 없고 부모로부터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나아가 적정 면허도 없는 미성년 자녀의 무단운전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약관의 객관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6. 비슷한 맥락의 다른 약관규정의 해석방법론을 통해 본 친족피보험자 규정의 해석방법론(규정문구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문구가 없다가

여 무단운전을 한 친족까지 친족피보험자로 인정하는 보험실무의 해석론의 부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비슷한 맥락의 다른 약관 규정을 살펴보자. 2013. 4. 1. 약관개정 전까지만 해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 규정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Ⅱ<sup>21)</sup>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는 문구가 존재했었다.<sup>22)</sup> 그런데 동 문구는 2013.4.1 이후 삭제되었다.

동 문구를 삭제한 이유(취지)는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Ⅱ(무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를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상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동 문구가 없다하더라도 대인배상Ⅱ(무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애초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무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다. 즉, 동 조항은 애초부터 있으나마나한 무의미한 조항이었으므로(용어규정에 대인배상Ⅱ 무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 삭제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행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피보험자 규정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 약관 규정 문구만 가지고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Ⅱ(무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를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현행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공제조항에는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인배상Ⅱ는 당연히 유한보험을 의미한다. 대인배상Ⅱ(무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에 비록 ‘유한보험’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정 취지상 유한보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약관 규정에 유한보험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만약 무한보험으로 해석하게 되면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가

21) 여기서 말하는 대인배상Ⅱ는 무한보험을 의미한다. ‘무한보험’ 이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당연히 무한보험일 수밖에 없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본질적으로 대인배상Ⅱ(무한)와는 양립할 수 없고 대인배상Ⅱ(무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2)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2.

무한보험인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부책이 되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고 이러한 해석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개념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같은 이치에서 친족피보험자 요건 규정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애당초 피보험자群(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무단운전자까지 친족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처럼 약관 조항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약관조항의 규정취지(존재이유)를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 기술적으로 해석하여야지 규정 문구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물론 규정 문구 그대로 문언적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약관조항도 있을 것이다).

## 7. 부모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 관련 판례

부모 몰래 부모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 또는 부인한 판례는 안타깝게도 대법원, 하급심을 통틀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하였다. 다만, 보험자가 그 미성년자(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는 다수 집적되어 있다. 동 판례들의 판결취지는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한호주머니 이론을 채용하여 구상권을 부인하였다.<sup>23)</sup>

23)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상태로 부모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

## V. 친족피보험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구별실익(담보별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는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4)</sup> 그렇다면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의 구별실익은 무엇일까? 면허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 자동차를 몰고나가 친구들과 유흥 후 이동 중 무보험자동차와의 쌍방과실 사고로 자녀(A)와 상대방 운전자(B), 동승한 친구(C)가 다친 사례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의 보험자의 보상책임관계를 알아보자. A에게 무면허 외에는 달리 면책사유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C는 사회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단운전의 동승자라고 가정하고 각 담보별로 살펴보자.

단, 배상책임담보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보험실무 및 법원실무에서 피보험자개별적용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피보험자개별적용은 면책약관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명칭 사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면책약관 개별적용’ 내지 ‘면책조항 개별적용’ 이라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sup>25)</sup>

### 1. 대인배상 I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B에 대하여는 부책, C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고, A는 B 및 C<sup>26)</sup>에

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9116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11770 판결 외 다수)

24) 김영길, 앞의 책, 16-23면.

25) 김영길, 앞의 책, 48면. ; 양승규, “복수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여부”, 손해보험 1996.9월호, 100면.

26) 보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C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을 면하지만 A는 운전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대하여 모두 부책이 되며 A는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B에 대하여는 부책, C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고 A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 및 C에 대하여 모두 면책이 되며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통해 B에게 지급한 지급보험금을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대법원에서는 동거 가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동거 가족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sup>27)</sup>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다. A는 담보 자체가 면책이므로(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 기명피보험자는 A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으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든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여지는 없다.

## 2. 대인배상II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B에 대하여는 부책, C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고, A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B 및 C에 대하여 모두 면책이 된다. 기명피보험자를 통해 B에게 지급한 지급보험금을 면책 피보험자인 A를 상대로 한 구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4.9.1. 개정된 현행 약관상 면책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은 고의사고에 한하기 때문이다.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B에 대하여는 부책, C에 대하여

---

높은 무단운전 사고에서 무단운전 차량에 탑승한 무상동승자 C에 대해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C는 여전히 자배법상 타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운행자에 해당하는 A는 C에 대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의 관점보다는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조각 내지 무상동승자의 비율적 운행자성 취득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2, 11면.

27) 2013. 3. 11. 상법개정(2015.3.12. 시행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상법 제682조 제2항 신설).

는 면책이 되고 A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B 및 C에 대하여 모두 면책이 되며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통해 B에게 지급한 지급보험금을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구상이 불가하다는 점은 대인배상 I 과 같은 맥락이다.

### 3. 대물배상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면책, A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면책이 된다.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명피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면책, A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면책이 된다. 어느 입장을 따르든 결론은 동일하다. 소유자(기명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를 통해 부책 후 A에게 구상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에게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sup>28)</sup>에도 구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대인배상 I ·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4. 자기신체사고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성년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부책이 된다.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성년 자녀는 친족피보험자에

2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0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0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해당되지 않아 면책이 될듯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또 다른 피보험자 유형인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자격으로 부책이 되므로 결론은 동일하다. 무단운전자 본인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 성격<sup>29)</sup>의 담보로서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그 본인에 대하여는 보상한다는 점, 친족피보험자 자격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자격으로 보상받는다는 점, 대인배상 I·II의 경우에도 무단운전을 한 자녀를 상대로 구상이 불가하므로 결과론적으로는 무단운전을 한 자녀가 대인배상 I·II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점, 자기신체사고 면책사유<sup>30)</sup>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무단운전자 본인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하겠다. 만약 무단운전을 한 가족(친족)이 자녀가 아니라면 예컨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책이 되지만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면책이 된다.

## 5.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책이 된다.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성년 자녀는 친족피보험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무보험차상해의 또 다른 피보험자 유형인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자격으로 부책이 되므로 결론은 동일하다. 만약, 무단운전을 한 가족(친족)이 자녀가 아니라면 예컨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책이 되지만 부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면책이 된다.

29)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30) 뺑소니 사고도 범법행위이지만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6.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오로지 기명피보험자만 인정하고 있으나 무단운전을 한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책이 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으면 부책이므로 A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가 면·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및 상법에서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구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은 불가하다.

### 【대인배상 I · II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

구분	A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A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견해		
	A	B	C	A	B	C
대인 I		O (기피와 A 모두 부책)	O (기피는 면책, A는 부책) *기피를 상대로 구상불가		O (기피는 부책, A는 면책) *A를 상대로 구상불가	× (기피와 A 모두 면책)
	A는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부담					
대인 II		O (기피는 부책, A는 면책) *A를 상대로 구상불가	× (기피와 A 모두 면책)		O (기피는 부책, A는 면책) *A를 상대로 구상불가	× (기피와 A 모두 면책)
자손 (부.배.자)	O			O		
자손 (형제자매)	O			×		
무보 (부.배.자)	O			O		
무보(형제 자매)	O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구분	A의 친족피보험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A의 친족피보험자성을 부정하는 견해
대물배상	×	×
자기차량손해	○	○ *A를 상대로 구상 불가

VI. 맺는말

이상 친족피보험자 조항의 규정취지와 부모 소유 자동차를 부모 몰래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운전한 자는 근원적으로 피보험자群(군)에 해당할 수 없고 친족피보험자 조항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단운전자까지도 친족피보험자로 해석하고 있는 보험실무의 약관해석론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자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피보험자 규정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식시킴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약관개정론으로서 친족피보험자 규정을 삭제하고(승낙피보험자 규정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므로 굳이 혼란만 야기시키는 친족피보험자 규정을 별도로 존치시킬 실익이 없다고 본다), 승낙피보험자 규정의 단서에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은 무단운전자가 아닌 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삽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는 부모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및 논의가 없었지만 본 고의 문제제기를 시발점으로 무단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광국,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 김광국, “자동차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사례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 김교창,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대한변호사협회지 147호, 1988.
- 김영길, “자동차보험이론과 실무”, 로이즈출판사, 2014.
-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관련 피보험자의 범위”,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2014.
- 김현록, “자동차 보험상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한 연구 : 대인배상Ⅱ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 2002.
- 남원식 외6, “조문별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울출판사, 1998.
- 백주민, “피보험자개별적용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09.
- 백주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2009.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2.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11.
- 신홍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제3자 보상액 공제조항의 고찰”.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1호, 2014.
- 양승규, “복수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여부”, 손해보험, 1996.
- 이보환, “실무 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7.
- 이상돈, “자동차보험의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소고 : 판례에서의 운전피보험자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손해보험 제473호, 2008.
- 이상원,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2001.
- 장덕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새로운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진산

-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2011.
- 조규성, “대법원판례를 통해본 무단운전과 운전자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1호, 2010.
- 조규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법학논총 제20집 제3호, 2013.
- 조규성,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 고찰”, 동아법학 제63호, 2014.
- 조규성,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와 보험금 착오 지급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고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2호, 2014.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2.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5.

## Abstract

In the automobile insurance, the concept of the insured is one of the most core areas and dealt importantly because it is a yardstick to measure whether you can get a benefit or not when you will have a car accident and it is also a measuring stick for determining the subrogation rights. In case of automobile insurance, the range of the insured expands such as relative insured, allowed insured, employer insured, driving insured in addition to named insured.

But these concepts of the insured are so difficult, so a number of dispute and controversy are happened related to the concepts of the insured. Particularly, even though it is misinterpreted and used in the insurance field with regard to relative insured concept of a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the theory of misinterpretation(the theory of misinterpretation tha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was likely to be fixed as the orthodoxy in the insurance field due to none of deep study or criticism about relative insured concep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is confusion is because of ambiguous defining the concept of relative insur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clause, also the secondary reason is may due to lack of the research reports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concept of relative insured. I've been working in an insurance litigation busines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lauses field in the last 20 years and I studied to achieve a reasonable conclusion questioning myself

whether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or not indeed, however I could not get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research reports which are associated with agenda I would like to discuss in this research paper.

Therefore, in this research pap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abroad, by presenting clear and correct theory abou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or not (by claiming tha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n't relative insured), this theory of misinterpretation which was fixed in the insurance field during the past relation to concept of the relative insured is corrected, and to offer the opportunity of attempt for active discussion and review about the unauthorized driver is relative insured or not, I got to write this research paper.

※ Key words : automobile insurance, relative insured,  
theory of misinterpretation, in the insurance field,  
unauthorized driver